

# 기술위원회 규정

제정 1997년 06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개정 2019년 09월 21일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학회” 라고 칭함) 정관 제4조(사업) 및,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의 사업 중 조사, 연구, 교육 및 기술자문 등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 (임무)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식·방식과 관련한 조사, 연구과제 도출
2. 부식관련 용어의 제정
3. 대학(전문대학, 대학원)의 부식과 방식 교육과 관련된 사항
4. 산업체인력의 부식방식 전문가 육성 교육
5. 기술자문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기술담당 부회장, 기술이사 및 약간명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2. 기술담당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의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제3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실시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업무 수행에 있어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 (소위원회 구성)

1. 기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업무별 또는 지역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

다.

2. 기술위원장은 업무적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 소위원회를 통·폐합을 할 수 있다.
3. 연 2회 이상 이사회 미참석 시 소위원회 위원장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여 개인 의사에 따라 차기년도 연임 또는 신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4. 업무별 소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업무별 소위원회 명단

- 도장방식 위원회
- 미래자동차 위원회
- 발전설비 위원회
- 부식방식 시뮬레이션 위원회
- 부식억제제 위원회
- 생체재료 위원회
- 스테인리스강 위원회
- 용융도금 위원회
- 음용수 설비 위원회
- 전기방식/파이프라인 위원회
- 전지/연료전지 위원회
- 조선해양 플랜트 부식방식 위원회
- 침식부식 위원회
- 토목건축 위원회
- 화학설비 위원회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1997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